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감염 대응능력 개선 위해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 병상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신축·증축되는 병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개선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격리병실이 의무화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둘째,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된다.

셋째, 중환자실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된다.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고, 이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면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몽골간호협회 니암수렌 회장(왼쪽에서 다섯째)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김옥수 회장(몽골회장 오른쪽)을 만났다.

몽골간협 회장 일행, 대한간호협회 방문

몽골간호협회 회장 일행이 대한간호협회 운영 시스템과 주요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8월 10일 간호협회를 방문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몽골간호협회 관계자 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면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은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이뤘고, 64년 만에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정립했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르잔잔 니암수렌(Dorjantsan Nyamsuren) 몽골간호협회장은 “저희들을 환대해주 감사드리며,

앞으로 서로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진취적인 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몽골간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며, 9월에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간호협회 관계자들은 대한간호협회 조직과 운영 시스템, 주요사업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간호협회 회원 가입 및 관리 시스템, 유류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역할, 간호사 휘장, 간호사신문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방문에는 몽골 국제물류 바토르대 간호대학장을 맡고 있는 오가실 연세대 명예교수가 함께 자리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6년도 제8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 의거 등록 제2008-0411호)

1. 응시자격

시험종목	응시자격
보험심사관리사	1. 보건 의료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의(졸업예정자 포함) 학력 소지자 (단, 관련학과에 대한 심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운영위원회에서 함) 2.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험심사관리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2급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의 보험심사관리사 실무경력을 갖춘 자

1) 3가지 응시자격 중 택 1하여 응시 가능.
2) 보건 의료 관련 학과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교육평가서비스(<http://cesi.kedi.re.kr/>)학과(전공)분류자료표 참고.
※ 2015년부터는 보험심사관리사 2급 자격검정시험은 시행하지 않음.

2. 시험일정

구분	내용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6. 8. 24(수) 09:00~9. 21(수) 18:00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수수료 납부	2016. 8. 24(수)~9. 21(수)	계좌이체
응시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수수료 출력	2016. 10. 7(금) 오후 2시 이후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수수료 출력
시험시행	2016. 11. 26(토) 10:00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수수료 출력
	(1) 수험표 배부 : 10. 7(금) 14:00 이후 개별 출력하여 지참	
	(2) 입실가능 : 9:00시부터, 입실완료 : 10:00 ※ 10:00~10:30(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3) 시험시간 : 10:30~12:20	
장소	서울 상문고등학교 (http://www.sangmoon.hs.kr/)	
합격자 발표	2016. 12. 16(금) 오후 2시 이후(예정)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통지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9.21)은 18:00에 접수 마감됩니다.
※ 입실완료시간(10:00)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 신한은행 100-024-915876(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2260-2590(ARS 2번)이나 전자우편(ryeong@kabone.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2016년부터 시험 장소가 서울 상문고등학교로, 시험 일자도 토요일로 변경되었으니, 시험 응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정부는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괴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

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에 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4년간 44~45%에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MRSA)의 경우 67.7%로 영국 13.6%, 프랑스 20.1%, 일본 53%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VRE)은 36.5%로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 대비 월등히 높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항생제 사용지침 확산,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염에 취약한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공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및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해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범부처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R&D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의료기관 간호사 매년 결핵검진 의무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해당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

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됐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연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